

2014년 중소기업 융·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< 센터연계형과제(상반기) >

중소기업의 융·복합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개방형 R&D활성화를 위한 「2014년 중소기업 융·복합기술개발사업」의 시행계획(센터연계형과제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(대학포함)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14년 3월 31일
중소기업청장

1. 지원개요

- “중소기업융·복합기술개발사업”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형 R&D 협력체의 異種 기술간 융합R&D를 통한 창의적 신기술·신제품·신시장 창출 지원
- '14년 센터연계형과제 지원규모 : 260억원, 87개 과제(계속과제 포함)
 - ‘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’를 통해 발굴·기획된 첨단 융합기술 분야 과제
 - ※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공고(제2013-4호, 2013.09.25)를 통하여 신청·접수·기획과정을 거쳐 전문기관에 추천된 과제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함(붙임1 과제 안내 참조)
 - 중소기업은 기술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청
 - 일반기술 유형 : 산업(기술)간 융·복합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한 과제
 - 농공상융합 유형 :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3세대 기술융합과제

2. 지원내용

□ 지원조건

구 분	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	총사업비			신청방식
		정부 출연금	민간부담금		
			현금 (보증연계 또는 자부담)	현물	
센터연계형과제	최대 2년, 6억 원	60%이내	15%이상	25%이내	자유공모

* 다만, 신청기관 중 비영리기관은 민간현금 부담을 면할 수 있으나, 총사업비의 민간 부담금(민간현금 비율 포함) 비율은 상기 원칙을 만족하여야 함

□ 민간부담금(현금) 조달방법

- 중소기업은 민간부담금(현금)을 보증기관의 보증연계 또는 자부담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(단, 보증연계와 자부담 혼용 불가)
- 보증연계 신청 중소기업은 보증기관(기술보증기금)의 기술평가보증을 통하여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
 - 보증연계를 신청한 경우 보증기관의 R&D경제성평가를 통해 보증 여부를 결정
 - *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는 보증연계 신청 시 두기관이 함께 신청하여야하며, 신청 전 보증기관을 방문하여 관련된 상담 가능

3. 신청자격

□ 공통사항

- **(주관기관)**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
 - * 단, 농공상 융합형 기술을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
- **(공동개발기관)**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,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(대학 포함) 또는 중소기업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
 - * 단, 농공상융합형 기술을 신청한 경우는 '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' 제16조, 제19조에 의거 설립된 농어업법인 또는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

□ 신청자격 등의 검토·확인

- 서면·대면평가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검토(전문기관)
- 현장조사시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현장 확인(관리기관)
 - * 신청한 사업계획서와 사실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

<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>

구 분	확인 근거 (증빙서류)
설립년월일(창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개인사업자 : 사업자 등록증 ▪ 법인사업자 : 법인 등기부 등본 *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, 개인사업자 설립 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
상시 근로자 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* 상시근로자 : 2013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((2013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)/12) ·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·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,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제외
부채비율, 자본잠식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 *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
R&D 투자 비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 *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R&D투자 비율 확인서로 판단
기본 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, 신용정보 등 확인 ▪ 국가R&D사업관리서비스(rndgate.ntis.go.kr) 조회 등

* 기술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,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

※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,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

※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

4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 : 2014년 3월 31(월) ~ 4월 15(화), 18:00까지

□ 신청방법 : 온라인 (인터넷)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

※ <http://www.smtech.go.kr>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온라인과제관리 → 과제신청 → 지원사업 →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(구비서류) 등록

□ 온라인 신청절차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회원가입	온라인 직접입력	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	접수 확인 및 완료
	사업계획서 [별지 제1-①] Part I	사업계획서 [별지 제1-①] Part II	

<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·접수요령>

① 1단계 : 회원가입

-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,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

② 2단계 : 온라인 직접입력

- [별지 제1-①호]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,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해 직접 입력

③ 3단계 :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

- [별지 제1-①호]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·업로드하는 것으로,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

- [별지 제1-② ~ ⑩호]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

④ 4단계 : 접수 확인 및 완료

-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(신청·접수 완료 확인)

☞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“제출하기”를 클릭한 후 “제출확인” 확인 필요

○ 신청시 구비서류

연번	서식 명	제출방법	해당여부
①	융·복합기술개발 사업계획서 -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(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용으로 구분) -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- 연구시설·장비 구입 계획서 - 연구시설·장비 도입 계획서 (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)	* 인터넷(SMTECH)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, 문서 파일 업로드	공 통
②	신용상태 조회 동의서		
③	융·복합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		
④	신청과제 관련 기술의 융합정도		
⑤	보증연계용 R&D경제성평가 신청서		
⑥	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		해당시
⑦	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		

*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'14. 6. 1로 기재 (단,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)

5.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

※ 상기 명시된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□ 현장조사 및 R&D경제성평가 (4~5월)

- 민간부담금을 자부담하는 경우 신청기관(주관 및 공동)의 신청자격, 기술개발능력, 사업화능력, 과제 중복성,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
- 보증기관의 보증연계를 신청한 경우 현장조사 및 R&D경제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

□ 대면평가 (5월)

- 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, 사업계획의 기술성 및 사업성,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·평가한 후,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

□ 지원과제 선정 (6월)

- 각 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'심의조정위원회'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

※ 종합평점 = 대면평가 점수 + 가점 - 감점

· 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4년 융·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

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(6월)

-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3자 협약체결

6. 기술료 납부

-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“성공”으로 판정될 경우,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%를 기술료로 납부

*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(1~2년이내)시에는 20~40%까지 감면

7.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

※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,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,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·지원 제외대상에 해당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참여기업, 공동개발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(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)
 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참여기업, 공동개발기관, 대표자 등)가 국세·지방세 체납자인 경우(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) 다만, 희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참여기업, 공동개발기관, 대표자 등)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(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)인 경우. 다만, 희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
-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,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,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
 -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(계량화·기능 추가 등 포함)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
-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·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

8. 기타 공지사항

- 중소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으로 각 사업의 세부 내역사업 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

사업명	세부 내역사업명
중소기업 융·복합기술개발사업	융복합과제
	이전 과제
	센터연계형과제

-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
 - 다만,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
 -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
 - ‘중소기업 R&D기획역량 제고’, ‘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’, ‘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
-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(사업신청 불가)
 - ‘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,
 - 개별 중소기업당 ‘저변확대’ 사업을 총 3회이상 수행한 경우는 ‘저변확대’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하며,
 - * 저변확대 사업을 총 3회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
 - 개별 중소기업당 ‘선택집중’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이 불가(저변확대, 선택집중 사업 대상)

- * 'R&D기획역량제고', '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', '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'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
- * 단, 'R&D기획역량제고'의 R&D기획지원사업은 참여가능하나, 사업신청 불가 사항(참여횟수 제한)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연계지원은 불가
- * 연도별 '저변확대' 및 '선택집중' 사업 현황 :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 시스템 참조(<http://www.smtech.go.kr>)

- '05년 이후 '선택집중'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'저변확대' 사업에 참여 불가



○ 그 외 적용기준

- 제품·공정개선사업은 '저변확대'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없이 참여 가능
- '05년부터 '저변확대'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'선택집중'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
- '산학연협력기술개발'사업 참여기업은 '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

□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공동개발기관, 과제책임자 등)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
-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
-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, 개발 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
- 기술개발 사업비 집행후 7일 이내에 회계 증빙서류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(SMTECH)에 등록(증빙서류는 협약설명회시 안내)

□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·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시설·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
-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·장비에 대해서는 「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 위원회」에서 도입의 타당성, 활용성,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또는 사업비 조정

※ 연구시설·장비라 함은 연구·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, 시험, 계측, 기계가공, 제조, 전처리, 영상, 교정, 데이터 처리, 입심으로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

※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·장비는 연구시설·장비로 산정불가하며,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조정

- 보증기관의 보증연계를 선택한 신청과제의 주관기관, 공동개발기관, 대표자(경영실권자 포함) 등이 보증기관의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연계에서 제외됨

- 부도, 휴·폐업, 신용관리정보대상, 파산, 회생절차개시 등의 경우
- 현재 금융기관 대출금 원금·이자 연체 중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원금·이자를 10일 이상 계속 연체한 기록을 보유한 경우
- 최근 1년 이내 자가소유 사업장 또는 대표자소유(배우자 포함) 자가주택에 대해 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경매신청 등 관리침해 중인 경우
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
- 직원 임금, 임차료, 4대 사회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
-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, 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(사고유보기업 포함), 보증채무 이행후 채권 미회수기업(연대보증인 포함)인 경우
- 보증기관 보증심사기준에 따른 신용도 하락 기업 등 기타 지원 불가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인 경우

* 상세사항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(<http://www.kibo.or.kr/src/guarantee/kba110.asp>) 참조

-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4년도 「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」 및 「융·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」을 적용함

9. 문의처

□ 사업안내

담당기관(부서)		문의사항	전화
사업총괄	중소기업청(기술협력보호과)	시행계획 공고	1357
전문기관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	신청·접수, 사업계획 작성, 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	1661-1357(내선 2번) (중소기업 R&D고객센터)
관리기관	지방중소기업청	현장조사	관리기관 현황 참조
센터전담기관	중소기업융합중앙회	센터연계형과제 과제기획 및 지역센터 선정	02-769-6436~7
보증기관	기술보증기금	보증심사	032-830-5719

□ 관리기관 현황

기관명	전화	주소
서울지방중소기업청	02-2110-6358	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
부산·울산지방중소기업청	051-601-5152	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8
대구·경북지방중소기업청	053-659-2289	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-11
광주·전남지방중소기업청	062-360-9158	광주광역시 서구 경멸로17번길 12
경기지방중소기업청	031-201-6978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
인천지방중소기업청	032-450-1156	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
대전·충남지방중소기업청	042-865-6135	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
강원지방중소기업청	033-260-1631	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
충북지방중소기업청	043-230-5333	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
전북지방중소기업청	063-210-6455	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
경남지방중소기업청	055-268-2554	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
제주특별자치도(기업지원과)	064-710-2638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

※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

-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: <http://www.smba.go.kr>
-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: <http://www.smtch.go.kr>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: <http://www.tipa.or.kr>

붙임 1. '14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센터연계형과제 안내

2.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1부.

<붙임1>

중소기업 융·복합기술개발사업 센터연계형과제 안내

□ 개 요

- 중소기업이 신청한 융·복합 기술과제를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가 기획하여 기술개발사업으로 연계하는 과제

* 중소기업은 “중소기업 융합R&D기획 멘토링그룹 지원 프로그램”을 통해 신청가능

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란?

중소기업 기술융합 활성화 및 융합과제 기획·발굴, 기술개발, 사업화 등 중소기업 융합사업의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, 중소기업청과 센터 전담기관에서 권역별(전국 12개 권역)로 지정·운영

<지원센터의 역할>

- 중소기업 기술 융합관련 조사·연구, 기술정보제공, 사례 발굴 및 보급,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제공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 융합 촉진
- 기술 융합을 위한 개방형 협력체 결성, 기술개발 및 사업화과제 기획지원, 사업연계관리 등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기술 융·복합 추진 지원
- 지역별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소, 대학, 지원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

□ 추진절차

구분	단 계	수행 방법	비 고
지역 센터 과제 기획 지원	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	●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	센터전담기관
	↓		
	선정평가 및 선정	● 사업계획서 등 검토 및 평가	12개 지역센터
	↓		
	협약체결 및 사업수행	● 지역센터-대표기관, 참여기관 등	
↓			
최종결과물제출 및 추천평가	● 센터연계형과제 사업계획서를 센터전담기관에 제출 및 추천평가		센터전담기관
↓			
센터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연계	● 추천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획과제 연계추천		센터전담기관 전문기관

구분	단 계	수행 방법	비 고
센터 연계형 R&D 과제 추천	현장조사 및 R&D경제성평가	추천받은 기획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R&D경제성평가(보증선택시) 실시	관리기관 보증기관
	대면평가	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	전문기관
	과제선정	심의조정위원회(센터연계형 과제 선정)	
	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	전문기관-주관기관, 공동개발기관 간 협약	

□ 신청자격(과제기획)

○ 대표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

* 과제기획 세부 신청자격은 센터전담기관 공고문 참고

- 과제기획 후 센터연계형과제로 연계가 확정된 신청기관은 추천 평가일을 기준으로 센터연계형과제의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
- 농공상융합 유형으로 신청한 경우 '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' 제16조, 제19조에 의거 설립된 농어업법인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·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'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'을 1개 이상 포함하여야 함

<농공상 3세대 기술융합의 예시>

구분	1세대(원물)	2세대(가공)	3세대(기술융합)
제품	농수산물	홍삼, 녹차, 김치 등 음·식료품	오디→염색약 약초→탈모예방샴푸
생산자	농어민, 농어업법인	음·식료품제조업	중소·벤처기업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

연도별 “저변확대” 및 “선택집중” 사업 현황

연도	“저변확대” 사업명	“선택집중” 사업명
2005	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일반과제) 중소기업 이 전기술개발사업(일반과제) 생산환경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(중소기업개발과제)	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전략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선도과제)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신규설치) 생산환경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(컨소시엄개발과제)
2006	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일반과제) 중소기업 이 전기술개발사업(일반과제)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(중소기업개발과제)	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전략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선도과제)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신규설치)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(컨소시엄개발과제)
2007	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일반과제)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(일반과제) 중소기업 이 전기술개발사업(일반과제)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(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)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(보급확산과제)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(슈퍼컴퓨터활용과제)	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전략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선도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투자연계과제)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신규설치)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(컨소시엄기술개발과제)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일반과제)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선도과제)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(첨단장비활용과제)
2008	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일반과제)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(일반과제) 중소기업 이 전기술개발사업(일반과제) 생산환경 혁신개발사업(일반과제) 생산환경 혁신개발사업(보급확산과제)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(슈퍼컴퓨터활용과제)	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전략과제)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투자연계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선도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투자연계과제)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신규설치)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업그레이드) 중소기업 이 전기술개발사업(선도과제) 생산환경 혁신개발사업(선도과제)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일반과제)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선도과제)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(첨단장비활용과제)
2009	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실용과제)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(일반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실용과제) 중소기업 이 전기술개발사업(실용과제) 생산환경 혁신기술개발사업(실용과제) 생산환경 혁신개발사업(보급확산과제)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실용과제)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(슈퍼컴퓨터활용과제)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(실용과제)	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선도과제)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신기술사업화평가연계)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투자연계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선도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협력펀드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투자연계과제)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신규설치)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업그레이드) 중소기업 이 전기술개발사업(선도과제)

		<p>생산 환경 혁신 개발사업(선도 과제)</p> <p>기업 협동형 기술개발사업(선도 과제)</p> <p>기업 협동형 기술개발사업(연계형 과제)</p> <p>첨단 장비 활용 기술개발사업(첨단 장비 활용 과제)</p> <p>창업 보육 기술개발사업(선도 과제)</p>
2010	<p>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사업(창업·실용 과제),</p> <p>중소기업 서비스 연구 개발사업(서비스 유망 과제)</p> <p>중소기업 서비스 연구 개발사업(산업 보안 과제)</p> <p>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(기업 제안 과제)</p> <p>제조 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(실용 과제)</p> <p>기업 협동형 기술개발사업(실용 과제)</p> <p>첨단 장비 활용 기술개발사업(슈퍼 컴퓨터 활용 과제)</p> <p>창업 보육 기술개발사업(실용 과제)</p>	<p>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사업(미래 선도 과제)</p> <p>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사업(글로벌 투자 과제)</p> <p>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사업(신기술 사업화 연계)</p> <p>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(수요 조사 과제)</p> <p>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(협력 펀드 과제)</p> <p>산학연 협력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사업(신규 설치)</p> <p>산학연 협력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사업(업그레이드)</p> <p>중소기업이 전 기술개발사업(지정 공모 과제)</p> <p>제조 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(선도 과제)</p> <p>기업 협동형 기술개발사업(선도 과제)</p> <p>기업 협동형 기술개발사업(연계형 과제)</p> <p>첨단 장비 활용 기술개발사업(첨단 장비 활용 과제)</p>
2011	<p>중소기업 서비스 연구 개발사업(서비스 혁신 과제)</p> <p>중소기업 서비스 연구 개발사업(산업 보안 과제)</p> <p>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(기업 제안 과제)</p> <p>해외 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(해외 수요처 (기업 제안 과제))</p> <p>제조 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(기업 제안 과제)</p> <p>융복합 기술개발사업(기업 제안 과제)</p> <p>연구 장비 활용 기술개발사업(기업 제안 과제)</p> <p>창업 성장 기술개발사업(창업 과제)</p> <p>창업 성장 기술개발사업(성장 과제)</p>	<p>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사업 (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과제)</p> <p>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사업(투자 연계 과제)</p> <p>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사업(미래 선도 과제)</p> <p>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사업 (R&D 기획 지원 연계 과제)</p> <p>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사업(농공상 융합 과제)</p> <p>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(수요 조사 과제)</p> <p>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(해외 수요처 (글로벌 협력 과제))</p> <p>산학연 협력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사업(신규 설치)</p> <p>산학연 협력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사업(업그레이드)</p> <p>제조 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(산학연 협력 과제)</p> <p>융복합 기술개발사업(산학연 협력 과제)</p> <p>융복합 기술개발사업(연계형 과제)</p> <p>연구 장비 활용 기술개발사업(연구 기관 제안 과제)</p> <p>민관 공동 투자 기술개발사업(수요 조사 과제)</p>
2012	<p>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사업(서비스 연구 개발 과제)</p> <p>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(기업 제안 과제)</p> <p>해외 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(해외 수요처 (기업 제안 과제))</p> <p>중소기업이 전 기술개발(기업 제안 과제)</p> <p>중소기업이 전 기술개발(해외 기술이전 과제)</p> <p>제조 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(기업 제안 과제)</p>	<p>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사업 (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과제)</p> <p>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사업(투자 연계 과제)</p> <p>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사업(미래 선도 과제)</p> <p>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사업 (R&D 기획 지원 연계 과제)</p> <p>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(수요 조사 과제)</p>

	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(보급확산과제) 융복합기술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 융복합기술개발사업(농공상용합형과제)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창업과제)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성장과제)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재도약과제)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건강관리과제)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앱과제)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1인창조기업과제)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투자연계멘토링과제)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첫걸음과제)	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해외수요처 (글로벌협력과제)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(산연협력과제)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(출연연과제)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신규설치)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업그레이드)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(산연협력과제)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(출연연과제) 융복합기술개발사업(산연협력과제) 융복합기술개발사업(센터연계형과제) 융복합기술개발사업(사업화연계과제) 융복합기술개발사업(출연연과제)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(연구기관제안과제)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(출연연과제)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(수요조사과제)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
2013	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	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·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

* '13년부터 사업단위로 '저변확대', '선택집중'을 구분하여 운영